

을 다하여 審査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當 委員會에서 都市計劃施設決定案 審査는 지난 會期에 保留된 3件과 當 會期에 새로 接受된 3件을 합쳐 總 6件을 審査한 結果, 決定案이 法規에 適合하고 市民生活에 꼭 필요한 都市計劃 施設이라고 判斷되는 3件에 대해서는 市長 決定案대로 同意意見を 提示하였고, 施設決定案 內容에 대하여 地域의 特殊性이 있어 現地確認 등 再審査가 要求되는 3件에 대해서는 다음 會期에 處理하도록 審査를 保留하였습니다.

이상 報告드린 대로 意見聽取 案件은 한 件도 소홀하지 않고 세밀하고 深度 있는 審査를 다 하였습니다. 案件別 審査結果는 配布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內容대로 意見聽取의 件이 可決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의 積極적인 協助를 부탁드립니다 審査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瓏會 그러면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意見聽取 議案番號 703番, 704番, 705番 이상 3件에 대하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各各 採擇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이상 3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1993. 4. 22
 도시정비위원회

1. 도시계획안 제출 및 회부사항

제출일자	제출건수	위원회회부일	회부건수	제 안 자
'92.12.14	1	'92.12.14	1	서울특별시장
'93. 2.16	1	'93. 2.16	1	"
'93. 2.24	1	'93. 2.24	1	"
'93. 3.11	3	'93. 3.13	3	"
4회	6건		6건	

2. 상정일자
 제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상정, 의결('93.4.19)

3. 제안이유 및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구돈회(도시계획국 소관 3건)
 주택국장 양 갑(주택국소관 3건)

가. 제안이유
 별첨 내용

나. 주요 요지
 별첨 내용

4.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안전별 내용 별첨

5. 심사경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안전별로 개별심사를 하

였는바,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이익에 관계되는 시설은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 처리토록 하고

○심사중 결정안에 대한 현지확인이나 재심사가 요구된 사항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보류하였음.

6. 위원회 심사결과(총 6건중)

가. 서울시장의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 3건

나. 금 회기에 심사보류 : 3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안전별 심사결과

시의견과 같음(3건)

의안 번호	703
----------	-----

1. 건 명 : 전농 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전농 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A=21,324㎡(국공유지:1,731㎡(524평)(6,451평)사유지:19,593㎡(5,927평))

○건축물:193동(유허가 182동, 무허가 11동)

○가구수:473세대(가옥주 207세대, 세입자 266세대)

○도시계획사항:일반주거지역

○주민동의율:78.2%

4. 위치:동대문구 전농동 141번지 일대

5. 검토의견

○시립산업대앞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주택촌으로서 도로망이 없어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상하수도 정비가 불량한 취약지역으로서 재개발이 급한 지역임.

○주민동의율 78.2%로서 법정요건이 구비되어 재개발구역 지정에 동의 의견임.

6. 심사결과

시의견과 같음

의안 번호	704
----------	-----

1. 건 명 : 답십리 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답십리 제9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A=39,693㎡(국공유지:2,284㎡(691평)(12,007평)사유지:37,409㎡(11,316평))

○건축물:378동(유허가 350동, 무허가 28동)

○가구수:873세대(가옥주 473세대, 세입자 400세대)

○도시계획사항:일반주거지역

○주민동의율:88.9%

4. 위치:동대문구 답십리동 40번지 일대

5. 검토의견

○전농2근린공원앞 지역은 20년전 건축된 집단 노후 불량주택지역으로서 도로망이 없어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공공시설도 태부족한 실정으로 주택개발이 요구된 곳임.

○인접 동측지역은 1992.12.26자 답십리8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9지역이 지정되면 지역일대가 재개발되게 됨.

○지정 동의의견임.

6. 심사결과

시의견과 같음.

의안 번호	705
----------	-----

1. 건 명 : 금호1가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2. 제안이유 : 금호1가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p>○A=9,907㎡→12,023㎡(증2,116)</p> <p>○추가지구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2,116㎡(641평) [국공유지 2,116㎡] • 건축물 : 25동(무허가 25동) • 가구수 : 65세대(가옥주 25세대, 세입자 40세대)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일부공원(969㎡) • 주민동의율 : 100% <p>4. 위치 : 성동구 금호1가동 51번지 일대</p> <p>5. 검토의견</p> <p>○이 지역은 금호가 제1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0.8 지정되어 사업진척(분할측량)중에 있었으나 당초 인접 외곽 25가구를 추가 개선지구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p> <p>○1990년 누락원인은 당시 북측은 중구로 서 구역이 달라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동측은 지적도상 축척이 상이(지정지구 1,200/1 : 추가지구 3,000/1)하여 착오로 축소 지정된 원인이 있음.</p> <p>○추가지정 동의의견임.</p> <p>6. 심사결과</p> <p>시 의견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금회기 심사보류(3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659</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 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도로확장 : B6~8m→15m, L=320m</p> <p>○도로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15m, L=414m • B=8m, L=276m <p>○도로폐지 : B=15~8m, L=3,316m</p>	의안 번호	659	<p>4. 위치 : 강서구 염창동 산32, 244번지 일대(염창근린공원 일대)</p> <p>5. 검토의견</p> <p>○강서구 염창동 근린공원 주변 교통량증가에 따른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가양택지 개발지구와 주택지간 연계도로를 개설코자 한 것이나</p> <p>○현지공원과 도로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후 처리의견임.</p> <p>6. 심사결과</p> <p>보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694</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A=137,242㎡→154,941㎡(증 17,699㎡)</p> <p>추가 : 17,914㎡(학교소유토지 15,527㎡, 미등록지 2,387㎡)</p> <p>해제 : 215㎡-학교 미매입 토지</p> <p>○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일부 풍치지구</p> <p>4. 위치 : 동작구 후석동 221일대(중앙대학교)</p> <p>5. 검토의견</p> <p>○학교용지 추가지역은 학교에서 대지를 매입하여 학교시설로 활용코자 시설 결정하는 것임.</p> <p>○해제 요구지역은 토지소유주의 반대와 학교시설에도(후면 가각부분)소요되지 않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제코자 하는 것임.</p> <p>○동의 의견임.</p> <p>6. 심사결과</p> <p>보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696</td> </tr> </table>	의안 번호	694	의안 번호	696
의안 번호	659						
의안 번호	694						
의안 번호	696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수도,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수도,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수도변경 A=3,947㎡→2,040㎡(위치변경 및 규모 축소) ○도로 결정 B=6m, L=26m ○당초 수도용지가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배수지 사고시 주택가의 수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진입로 확보</p> <p>4. 위치 : 도봉구 수유동 산 84-4일대</p> <p>5. 검토의견 ○당초 도봉구 수유동지역 급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3,000톤 규모(4,000세대, 13,000명)의 배수지를 1990.9.28 결정하였음. ○현지가 급경사로 배수지 사고시 인근 주택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25%~8%)배수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임. (사고예방을 위한 여과지를 월편계곡으로 변경하여 면적 축소하고 진입로 신규 결정사항임) ○동의 의견임.</p> <p>6. 심사결과 보류</p> <hr/> <p style="text-align: center;">전농제5주택개량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703</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3.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건 명 : 전농제5주택개량제개발구역지정</p> <p>2. 제안이유 : 전농제5주택개량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의안 번호	703	제출년월일 : 1993.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p>3. 주요요지 ○A=21,324㎡(국공유지 : 1,731㎡(524평)(6,451평) 사유지 : 19,593㎡(5,927평)) ○건축물 : 193동(유허가 182동, 무허가 11동) ○가구수 : 473세대(가옥주 207세대, 세입자 266세대)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민동의율 : 78.2%</p> <p>4.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141번지일대</p> <hr/> <p style="text-align: center;">답십리제9주택개량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704</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3. 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건 명 : 답십리제9주택개량제개발구역지정</p> <p>2. 제안이유 : 답십리제9주택개량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A=39,693㎡(국공유지 : 2,284㎡(691평)(12,007평) 사유지 : 37,409㎡(11,316평)) ○건축물 : 378동(유허가 350동, 무허가 28동) ○가구수 : 873세대(가옥주 473세대, 세입자 400세대)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민동의율 : 88.9%</p> <p>4. 위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40번지일대</p> <hr/> <p style="text-align: center;">금호1가제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705</td> <td style="width: 70%;">제출년월일 : 1993. 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td> </tr> </table> <p>1. 건 명 : 금호1가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지정</p> <p>2. 제안이유 : 금호1가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p>	의안 번호	704	제출년월일 : 1993. 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705	제출년월일 : 1993. 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703	제출년월일 : 1993.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704	제출년월일 : 1993. 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의안 번호	705	제출년월일 : 1993. 3.1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